

화해허가신청 고지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8829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표당사자들과 피고로부터 재판상 화해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1. 총원의 범위

'소송허가결정 고지서' 참조

2. 화해의 이유

총원들은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신속히 보전받고, 피고는 경영상의 불안정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실현, 즉 총원들에 대한 온전하고 신속한 손해배상과 피고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이라는 양 당사자의 목표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하여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3. 원고측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지급방법(화해의 내용)

가. 지급총액

피고가 총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은 29억원으로 합니다.

나. 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재판상화해가 허가된 이후 2010. 5. 31.까지 화해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대표당사자가 정하는 지정계좌에 입금(아래 다.항에서 보는 주식 교부의 경우에는 대표당사자가 지정하는 증권계좌에 대체)합니다. 2010. 5. 31.까지 재판상화해가 허가되지 아니하면 허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액 전부를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지급방법

지급액의 2분의 1은 현금으로,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1주당 단가는 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급일에 피고가 지급할 자기주식의 수량은 총 211,063주(≒14억5,000만원÷단가6,870원)입니다.

4. 변호사 보수

'소송허가결정 고지서' 참조

5. 분배의 기준 및 방법 등

가. 분배의 기준

각 구성원에 대한 분배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분배계획안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손해액의 산정

아래의 '총원기간'이라 함은 2008. 8. 14.부터 2008. 12. 19.까지, '매도기간'이라 함은 2008. 12. 19.부터 2009. 8. 14.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times$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

(2)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6,870원) $\times$ {(총원기간 중 총 매수주식수 - 총원기간 중 총 매도주식수)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

6. 화해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의 일시 및 장소

2010. 3. 12. 16:30 수원지방법원

7.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소·연락처 및 문의 방법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영길, 함승완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 19층

(전화번호 : 02-2183-2700, 팩스번호 : 02-2183-2790)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 재판장 판사 최동렬